

(2) 在留資格の変更

現재取得している在留資格の活動を中止して、別の在留資格にあてはま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場合は、在留資格変更手続きが必要です。手数料4,000円。

【必要書類】

-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 ・活動内容ごとに法務省令で定める資料
- ・パスポート
- ・在留カード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3) 出生による在留資格の取得

日本国内で出生したとき、出生後30日以内(但し、60日以内に出国する場合は必要ありません)に入国管理局(出張所)で在留資格の取得許可の申請をします。

【必要書類】

-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 ・両親の在留カード
- ・両親の旅券(パスポート)
- ・出生証明書、母子健康手帳など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2) 체류자격 변경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 할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 4,000 원

【필요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 활동 내용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 여권
- 체류카드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3) 출생에 의한 체류자격 취득

일본에서 출생하여 출생일부터 30일 이내(단, 6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는 필요없습니다)에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체류 자격의 취득 허가의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체류자격 취득허가신청서
- 부모의 체류 카드
- 부모의 여권
- 출생 증명서, 모자 건강 수첩 등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4) 永住許可

日本に永住を希望する人は、永住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入国管理局(出張所)で永住許可を申請します。手数料は許可されるとき、8,000円が必要です。詳しくは、入国管理局へ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必要書類】

- 永住許可申請書
- パスポート
- 在留카드
- 身分을 증명하는 문서 등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4) 영주허가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주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영주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8,000 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 영주허가신청서
- 여권
- 체류카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5) 자격외활동의 허가신청

현재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수입·보수가 있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留学生의 자격외활동

자격외활동시간의 제한

• 주 28시간 (1일 8시간) 이내

자격외활동장소의 제한

유호업소 또는 유호업과 관련된 영업소 (예를 들면, 바, 스낵, 파칭코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의 수속

【필요한 서류】

-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서
- 체류카드
- 여권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및 학교의 유학생 담당과 또는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오카야마출장소

TEL: 086-234-3531

(6) 재입국허가신청

再入国許可申請

재입국허가없이 일본의 국외로 출국하면 일본으로 재입국할 때에는 다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여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1년 이상 나중이 될 경우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나서 출국합니다. 수수료 3000 엔(1회 한정) 혹은 6000 엔(복수허가)을 지불하면 재입국허가의 증인스티커를 여권에 붙여 줍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기간의 범위내로 5년간이 최장으로 결정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미나시재입국허가

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 (체류 기한이 출국之日起 1년 이내에 오는 경우는 체류 기한까지)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출국 후, 미나시재입국허가의 유효 기한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출국 할 때는 반드시 여권과 체류카드를 제시하십시오.

(7) 住居地以外の変更登録申請

住居地以外の変更があるときは、入国管理局に届出て変更してもらいます。氏名、生年月日、性別、国籍・地域の変更は 14 日以内に入国管理局の窓口で行います。

(8) 紛失と再交付

在留カードを紛失したり、盗難にあったり、汚してしまった場合には、警察に紛失届等を提出し、受理証明書をもらい、その事実を知った日(海外で知ったときは再入国情の日)から 14 日以内に入国管理局で再交付の申請をし、新しい在留カードをもらいます。その他、在留カードの写真を変更したい場合など、在留カードの交換を希望する場合にも再交付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9) 在留カードの返納

死亡したときは、死亡の日から 14 日以内に本人の親族または同居人が在留カードを最寄りの入国管理局に返納します。日本を出国し、再入国しないときは、出国の際に空港・港の入国審査官に渡してください。

(7) 주거지 외의 변경등록신청

주거지 외에 변경이 있으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변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은 14 일 이내에 입국관리국 접수처에서 합니다.

(8) 분실과 재교부

체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혹은 손상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서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해외에서 알았을 경우는 재입국날)부터 14 일 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 외에 체류카드사진을 변경하고 싶거나 체류카드의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재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체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인의 친족 혹은 동거자가 체류카드를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반납합니다. 일본을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는 출국 시에 공항·항구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십시오.